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2184호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409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3-50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19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7

회
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409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2. 1.(30일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검단신도시****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28260-2018-00212) 임*돈
	주 소	인천시 서구 고산후로**번길** ***호 후면상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2022 연수교육 미이수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 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5. 법 적 근 거 및 조문내용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처분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6.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 출 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시청	부서명	주택정 책과	담당자	김은별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1층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440-4752		
전자우편		gdmintel@korea.kr					
제출기한	2023년 12월 1일(금) 까지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공공주택팀)으로 문의(김은별 ☎ 032-440-4752) 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3-50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3.~2023.11.20.(18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5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체납본세(원)	반송사유	비고
1	000263	김표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8 , 703동 502호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2023.5.18. 06:34	중구 개항동 월미로 이동 4반	너비(0.28미터) 초과, 총너비(2.78미터)	대전87 아 2458	300,000	반송(이사불명)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19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소방령 이하 소방본부 근무자에 대한 별도 전보기간을 삭제하는 등 조직 및 인사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령 이하 소방본부 근무자의 별도 전보기간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목 내지 라목)

- 나. 전보기간 예외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제1의2호)
- 다. 전보기준 예외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7항)
- 라. 소방경 계급의 소방본부 전입 제한기준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3호)
- 마. 소방본부 전입기준 근무경력 기간 산정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소방행정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민욱(전화번호 032-870-3013, 팩스번호 032-870-3085, 전자메일 wonmihigh@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2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3 참조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전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설관서의 경우에는 전보기간의 100분의 50이 지나면 전보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파견 및 소방관서”를 “휴직(「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나목·라목에 한정한다.), 파견 및 소방관서”로 한다.

3. 소방경: 현 계급 승진임용일부터 4년 미만인 사람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전보기준) ① 전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현 소방관서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u>다만, 인사운영 여건과 전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고,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28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전보할 수 있다.</u></p> <p>가. (생략)</p> <p>나. 소방령: 2년. <u>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령은 5년으로 한다.</u></p> <p>다. 소방경: 3년. <u>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경은 5년으로 한다.</u></p> <p>라. 소방위 이하: 5년. <u>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u></p>	<p>제6조(전보기준) ① ----- ----- -----.</p> <p>1. ----- ----- -----. <단서삭제></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단서삭제></p> <p>다. -----. <단서삭제></p> <p>라. -----. <단서삭제></p>

경은 7년으로 한다.

<신 설>

2. ~ 5. (생략)

② ~ ⑥ (생략)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관서의 경우에는 전보기간의 100분의 50이 지나면 전보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소방공무원을 전보하는 것이 소방관서별 정원, 직급, 보직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방본부 전입기준 등) ① 소방본부 전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략)

3. 소방경: 현 계급 승진임용일 부터 4년 미만이고, 외근부서장 및 외근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다만, 해당 계급에

1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전보할 수 있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설관서의 경우에는 전보기간의 100분의 50이 지나면 전보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소방본부 전입기준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소방경: 현 계급 승진임용일 부터 4년 미만인 사람

서 외근부서가 없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근무경력자는 해당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파견 및 소방관서 외 기관의 근무경력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휴직(「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나목·라목에 한정한다.), 파견 및 소방관서 외 기관의
-----.

붙임 2.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 현